

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5년 2월 13일
복지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5년 1월 23일, 고영찬 의원
- 나. 회부일자 : 2025년 1월 23일
- 다. 상정일자 : 제25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최 중
제1차 복지건설위원회(2025년 2월 13일)
 -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관리 규정으로만 운영되던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린이공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, 어린이공원의 효율적인 유지 및 안전한 이용을 위한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1)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(안 제1조 및 제2조)
- 2) 조례의 적용 범위와 구청장의 책무(안 제3조 및 제4조)
- 3) 어린이공원 관리·지원계획 수립(안 제5조)
- 4) 안전점검 및 조치사항(안 제6조 및 제7조)
- 5) 관리위탁 등(안 제8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추병수

나. 검토의견

1) 제정 이유

○ 본 제정안은 어린이공원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들이 유익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의원 발의되었음

2) 주요 내용

가)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(안 제1조 및 제2조)

-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어린이공원을 정의하고 조례 목적을 규정함

나) 조례의 적용 범위와 구청장의 책무(안 제3조 및 제4조)

- 조례의 적용 범위를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치·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공원으로 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한 구청장 책무를 규정함

다) 어린이공원 관리·지원계획 수립(안 제5조)

- 어린이공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매년 관리 지원계획을 수립하게 하고, 상위법령에 따라 어린이공원 등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함

라) 안전점검 및 조치사항(안 제6조 및 제7조)

- 구청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안전점검을 위한 기준을 정해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기준 미달 사항에 대해 조치를 취하도록 함

마) 관리위탁 등(안 제8조)

- 어린이공원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단체 또는 개인에게 관리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

3) 검토 의견

○ 금천구 관리규정에 따른 어린이공원 업무를 자치법규인 조례로 제정하여

어린이공원 관리의 실효성을 부가하고 제반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